

위임전결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직제규정 개정('22.8.26.)에 따른 부서 및 업무내용 명칭 변경 등을 위임전결규정에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가. 도시재생지원기구의 부서 명칭을 도시정비처로 변경함
- 나. 부서별 업무내용의 일부 용어를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8층 기획조정실
- 담당자(이메일) : wkl@khug.or.kr
- 전화번호 : 051-955-5315
- 팩스번호 : 051-955-5306

4. 예고기간 단축사유

조직 및 인력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조속한 사규 개정 필요

별첨 위임전결규정 일부규정개정안 1부.

[별첨]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별표](제3조 관련) <u>위임전결기준표</u>	[별표](제3조 관련) <u>위임전결기준표</u> * 개정내용 불임 참조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일부부터 시행한다.	직제조정에 따른 부서, 업무명칭 변경 내용 반영

위임전결기준표 (제3조 별표 관련)

현행								개정안							
☐ 도시재생지원기구								☐ 도시정비처							
업무내용	영업부서		본사부서				비고	업무내용	영업부서		본사부서				비고
	팀장	부서장 (출장소장)	팀장	부서장	본부장	사장			팀장	부서장 (출장소장)	팀장	부서장	본부장	사장	
1. 지원기구 업무 총괄								1. 도시정비처 업무 총괄							
가. 도시재생지원기구 구성·운영 방침 수립 (업무처리기준 포함)					○			가. 도시정비처 구성·운영 방침 수립(업무처리기준 포함)					○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같음)							
2. 지원기구 운영 등								2. 도시정비처 운영 등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같음)							
다. 지원기구 정부 용역 수탁 (1)~(4) (생략)								다. 도시정비처 정부 용역 수탁 (1)~(4) (현행과같음)							
다.~라. (생략)								다. ~ 라. (현행과같음)							
3.~5. (생략)								3.~5. (현행과같음)							

현 행								개 정 안							
☐ 도시혁신기획처								☐ 도시혁신기획처							
업무내용	영업부서		본사부서				비고	업무내용	영업부서		본사부서				비고
	팀장	부서장 (출장소장)	팀장	부서장	본부장	사장			팀장	부서장 (출장소장)	팀장	부서장	본부장	사장	
1. (생략)								1. (현행과같음)							
2. 도시재생 기획								2. 도시계정 기획							
가. (생략)								가. (현행과같음)							
나. 도시재생 성과분석 및 목표관리								나. 성과분석 및 목표관리							
3. 기금 도시계정 결산								3. 도시계정 결산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같음)							
4.~8. (생략)								4.~8. (현행과같음)							

[참고]

관련 규정

□ 심사위원회규정

제8조(협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업무·제도의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약관 및 사규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신용조사 및 평가기준의 선정과 신용평가등급의 업무적용기준 결정
6. 주전자계산기의 도입 및 전산화대상업무의 용역개발사항
7. 부서별 업무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8. 현재 시행중인 방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사항중 담당본부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규제신설 체크리스트

1. 규제 개요

규제명	위임전결규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규제대상	해당없음		
신설사유			
기대효과			

2. 체크리스트

① 규제 해당 여부	해당 여부 (○, X 표기)	
- 고객 등 특정인의 권리를 제한하는가?		X
- 고객 등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가?		X
- 불특정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가?		X
- 불특정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가?		X

⇒ 상기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규제로 판단(아래 항목 체크)

② 규제개혁 추진전략의 3대 중점방향에 부합하는가?	해당 여부 (○, X 표기)	
- 고객 등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규제인가?		
- 회사의 손실 방지,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인가?		
- 비정상적인 업무관행을 폐지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규제인가?		

③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해당 여부 (○, X 표기)	
- 규제 신설의 목적이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가?		
- 고객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제 방법이 적정한가?		
- 규제 신설로 인한 고객 등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가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 규제 신설로 인한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등 사익 침해보다 회사의 손실 방지 등 공익이 더 큰가?		

⇒ ②~③의 7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모두 충족할 경우 규제 신설을 인정

※ 체크리스트 세부항목에 대한 추가적 자료가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 첨부